

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13. 7. 12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계획(설치학과 및 모집 인원)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
3.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4. 전공심화과정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
5.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
3-0-30 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규정

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